집행기준 42-76-1 —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사업연도종료일 매매기준율 등 통화선도, 통화스왑, 환변동보험 다음의 방법 중 신고한 방법(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) 1.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.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･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.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화폐성외화자산･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1. 취득일 또는 발생일(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일)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2.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(2호 적용 이전에는 1호를 적용함)